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1일, 김윤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윤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

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

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개설(변경) 등록을 신청한 약국이 i) 일정 기준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ii) 현행법상 개설자격, 면허대여 금지 및 복수약국 개설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iii) 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약국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기 전에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약국 개설과정에서의 행정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단속 위주의 현행 체계를 보완하고 불법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약사 면허 대여 관행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현행법상 약국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 소관 사항이므로,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약국개설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를 시·군·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0조제7항제1호는 “약국의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약국의 면적에 관한 별도 제한

이나 면적과 연계된 규제가 없으므로 어떠한 기준과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은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심의 결과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인지와 그 결과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심의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법률 위반이 아닌 사항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약국 개설이라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적합한지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은 약국개설위원회의 위원을 약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사는 약국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사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